



재활용 실적인정을 위한 인정범위 안내

환경공단이 제시한 '재활용실적인정 세부기준' 내용을 사례로 위주로 발췌하여 소개한다.

1. 재활용실적 인정을 위한 계량증명서 인정범위

-적용원칙 : 임의 조작, 수기 작성, 1도 계량 불인정

- 적용시기 : 2011년부터
- 계량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실시간) 계량을 원칙으로 함

- 재활용 실적 인정세부기준

- 임의 조작 : 계량증명서 중 재활용실적 인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하여 수동 조작을 통한 사후 입력 등의 임의 조작 불가
 - ※ 필수기재사항 : 계량표 일련번호, 계량일시,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 수기 작성 : 필수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수기 작성 실적 불인정
- 1도 계량 : 지자체·공인계량소 이외 1도 계량 불인정

※ 참고 : 환경부 예규 제432호 (2011. 3. 11)

- 회수-재활용실적 증빙자료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발행한 계량 증명서,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불인정
- 허위 회수-재활용실적이 적발된 비율에 따른 자격제한

구 분	1% 미만	1%이상 5%미만	5%이상 25%미만	25%이상
적발비율	주의	경고	1년간 자격제한	2년간 자격제한

* 적발된 비율(허위 회수·재활용실적량 ÷ 의무이행결과보고서상의 회수·재활용실적량)

2. 사례로 살펴보는 실적인정 기준

사례 1. 직접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재활용하는 업체의 경우, 동일품목에 대한 혼합재질로 반입 받아 자체 선별 및 재활용하기 때문에 각 재질별 별도 계량이 어려우나, 전체 혼합품에 대한 계량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혼합품 매입품에 대한 계량증명서는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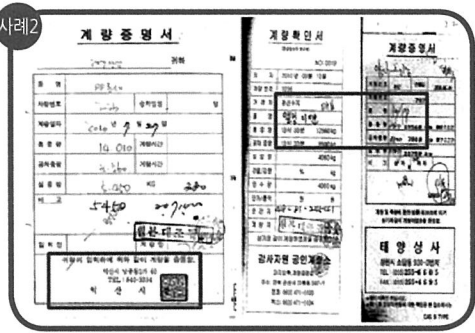
- 비대상품 혼합비율 조사 및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품목 확인

*1. PS, PP 등 동일품목 이내 재질이 혼합된 경우 해당

2. 캔, 유리병 등 다른 품목이 혼합 반입된 경우는 인정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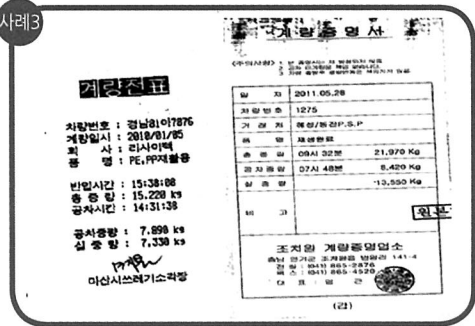
사례 2. 수기 작성 계량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 정부기관(지자체) 발행 계량증명서
- 일부 기재사항의 수기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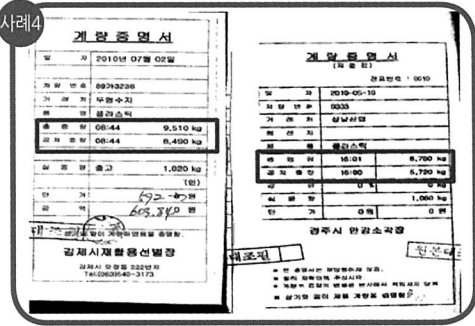
- 정부기관(지자체)에서 계량증명한 증명서에 한해 수기 작성 인정
 * 가급적 수기 작성 계량증명서는 지양하도록 개선 유도
 - 일부 수기 작성 인정
 * 거래처, 품명에 한정하며, 필수기재사항은 수기 작성 불인정

사례 3. 일련번호가 기입되지 않거나 계량증명서 자체에 일련번호 입력란이 없을 시 인정 여부?



- 지자체·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한 증명서에 한해 일련번호 미기재 인정
 * 향후 불인정방안 검토 추진계획
 - 실적 점검 시 일련번호 고의누락 발견 시 계량 실적 불인정

사례 4. 총중량 시간과 공차중량 시간이 동일(1도 계량)한 경우 인정 범위



- 지자체·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한 증명서에 한해 1도 계량 인정
 - 민간(자체) 계량대의 경우 1도 계량 불인정
 * 향후 공인계량소의 경우도 1도 계량 불인정방안 검토계획

사례 5. 재활용제품 매출 부분에 있어 계량증명서를 타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여부

- 단일재질의 경우 현 상거래 상 재생원료를 별도 계량하지 않고(톤백단위로 무게를 측정하여 출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의한 거래가 통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인정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계량증명서가 있을 시 실적 인정
 ● 단, 계량시스템 개선(인디게이트 설치)을 통해 발행된 계량증명은 인정 자체 계량대의 경우 1도 계량 불인정

사례 6. PSP재질의 경우 반입시 부피 대비 중량이 매우 낮아 계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PSP 재질에 대해서도 매입(반입)부문에 대한 계량 증명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하는지?

- PSP품목(EPS포함)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대장 등을 통한 매입 실적 인정
 ● 매입에 대한 계량 증명은 현행을 유지하되,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이 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 반드시 첨부